- 대구광역시 노동천익센터 관리·운영 사무 -민간위탁(신규위탁) 동의안

의 안 번 호 **6481**

제출년월일 : 2022. 10.

제 출 자:대구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핵심역할을 수행할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·운영 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(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), 제4조(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)
-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사무의 위탁)
-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(시장의 책무), 제6조(사업 및 예산 지원)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(위탁사무 기준), 제5조(위탁사무 대상), 제11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

○ 필요성

- 사례관리 및 실태조사를 통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 근로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역량을 갖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산업전환 과정의 노동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 대응 필요
- 민간위탁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감안, '22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 시 추진중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제약 등 민간의 전 문성을 적극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위탁범위 :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
- 위탁사무
 - (정책연구) 지역 내 산업노동구조 및 노동환경 파악을 통한 취약계층 근 로자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회·세미나 등
 - (법률지원) 취약계층 및 비조직 근로자 권리구조를 위한 각종 노무법률상 담, 침해대응 가이드라인 개발, 상담사례집 발간
 - (교 육) 노동인권·법률·산업안전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
 - (인식개선) 권리보호 캠페인,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등
 - (기획협력) 모범사업장 발굴 및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 등
 - 그 밖에 대구광역시가 필요시 요청하는 업무 지원 등

라. 위탁시설 현황

○ 시설위치 : DTL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2층(달서구 조암로 13)

○ 시설조성 : 2022. 3. ~ 6월 ※ '22. 7월 개소

○ 시설규모 : 약 53평(연면적 176.4m²)

○ 주요시설 : 사무공간, 회의실, 상담실 등

○ 인원현황 : 5명(센터장 1, 팀장 1, 직원 3)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민간위탁금 700,000천원(시비 100%)

○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금 액	산출근거	
계	700,000		
인건비	280,000	· 센터장 및 직원 급여 등	280,000
	140,000	· 시설임차 및 유지관리	50,000
센터 운영 및 관리		· 공공요금 및 제세, 사무용품 구입 등	10,000
		· 홍보 및 기타운영	40,000
		· 업무용 기자재 대여 등	40,000
		· 정책연구	80,000
	280,000	· 법률지원	80,000
사업 운영		· 교육	50,000
		· 인식개선	40,000
		·기획협력	30,000

* 수탁기관 최종 선정 시 변경 가능

아. 향후계획

○ 수탁기관 선정(공모) 및 위탁계약 체결 : '22. 11. ~ 12월

○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: '23. 1월 ~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붙임 1

나.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: 붙임 2

붙임 1

관련 법령

근로복지기본법

- 제3조(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) ① 근로복지(임금·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정책은 근로자의 경제·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,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.
 -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, 나이, 신체적 조건, 고용형태,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·영세기업 근로자, 기간제근로자(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), 단시간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 간근로자를 말한다), 파견근로자(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하수급인(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)이 고용하는 근로자,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4조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· 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·기금·세제·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4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와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
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기초자치단체 (구·군) 및 노동·경영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사업 및 예산 지원)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, 고충처리, 상 담활동 지원 사업
 - 2.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
 - 3.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
 - 4.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
 - 5.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
 - 6.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,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
 - 7.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, 근로자의 권리보호, 근로자 복리증진, 상생의 노사문화확산 및 고용 유지·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-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- 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 -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 -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대구광역시 시무의 민간위탁 조례

- 제4조(위탁사무 기준) 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제5조(위탁사무 대상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- 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- 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 - 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- 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 - 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 - 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- 제11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 법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.
 -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읠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붙임 2

│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

노동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(안)

노동복지 지원제도 진입 前 단계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공간인 「노동자 권익지원센터」 설치 및 운영계획임.

I 추진근거

- ○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
 - 근로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 근로자*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 지원
 - * 영세사업 근로자, 건설근로자, 이주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

Ⅲ 추진목적 및 필요성

-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 고용 불안정 및 열악한 노동환경 심화
 - 사회 전반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서비스·운수 등 서비스업종 집중 심화
 - 신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정 지속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환경 악화
- 노동 권익보호를 위한 예방적 서비스에서 권리구제까지 통합 노 동행정 서비스 추진 필요
 - ⇒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현안 조사연구 및 협업과제 발굴로 노동복지 지역편증 해소 및 노동복지 서비스 질 개선

Ⅲ 추진방향

- 근로복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 지원
-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, 법률상담 및 교육, 일자 리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
- 노동복지 지역편중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역별 지원센터 연차 별 확대 설치(구·군 참여 유도)

Ⅳ 설치 및 운영계획

□ 노동자 권익지원센터 개요

○ 역 할 : 취약계층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

·상담·교육 등 종합서비스 지원

○ 주요기능

- 취약계층 근로자 실태조사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전략사업 발굴

- 노동권익 법률상담 및 교육·홍보 등 논스톱 통합서비스 지원

-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

-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

2 **시설 조성**

○ 시설명칭 : 대구 노동자 권익지원센터

○ 시설위치 : DTL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2층(달서구 조암로 13)

○ 시설규모 : 약 176.4㎡(약 53평 규모)/ 사무실·회의실·상담실 등 구비

○ 설립목표 : '22. 6월 예정

○ 소요예산 : 250백만원(시설임차 50, 시설조성 200)

③ 운영방법 검토

○ 운영방법 비교

구	분	민간위탁	市 직접 운영		
		·민간 전문성 활용, 급변하는 노동환경에	·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심적 역할		
장	저	신속능동적 대응 가능	·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개발 가능		
Ö	점	·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공공			
		서비스 품질 제고			
단 점	74	·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 과열	·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대응기능 저하		
	召	·특정단체 근로자 중심 편향적 지원	·노동 관련 전문경험 부족		

- 검토의견 : 민간위탁
 - 관련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신속·능동적 대응으로 실질적 근로복지 개선에 기여 ※ 민간위탁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감안 '22년 민간경상보조사업 한시적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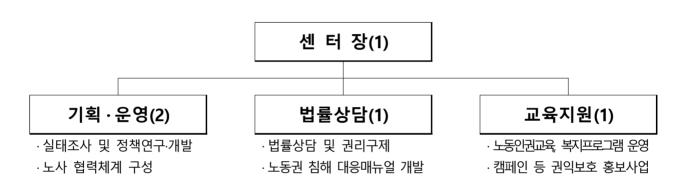
④ 운영계획

○ 운영시기 : '22. 6월 ~

* '22년 한시적 민간경상보조사업

○ 운영방법 : 민간위탁

○ 조직구성(안) : 3개 분야 5명 정도 *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변동 가능



5 소요예산 ('22년 기준)

(단위: 천원)

항 목	예산액	산 출 근 거	
계	900,000		
시설조성	250,000	○ 대구 노동자권익센터 시설조성 - 내부 인테리어공사	250,000 200,000
		- 임차료	50,000
센터운영	650,000	○ 대구 노동자권익센터 운영 * 민간경상보조사업 기준 - 인건비(담당자 급여 및 4대보험료 등) - 취약계층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, 토론회·세미나 - 법률상담, 상담사례집·노동권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발	650,000 200,000 100,000
		간 - 노동인권 교육,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- 권리보호 캠페인 및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등 - 근로자 보호 사업장 발굴·협약, 노사상생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- 기타운영비(홈페이지 제작, 사무용품 구입 등)	70,000 80,000 50,000 50,000

Ⅴ 세부 사업내용

- 정책기획 및 운영
 - 설문 및 심층면접. 전문가 자문 등 토대 근로환경 실태조사 시행
 - 정책토론회, 세미나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
 - 지역 내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노사상생 거버넌스 구축·확산
- 법률상담
 -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근로자를 위한 찾아 가는 근로교육 및 법률상담
 - 상담사례집·노동권 침해대응 가이드라인 발간 등 노동자 권리구제 서비스
- 교육지원, 인식개선 및 홍보
 - 노동인권 향상교육,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운영
 - 근로자 보호 모범 사업장 발굴·협약. 노사상생 지원프로그램 개발·운영
 - 취약계층 근로자 밀집지역 등 대상 근로자 권익보호 캠페인 전개, 노 동권익 서포터즈 구성·운영 등 대시민 관심 제고

Ⅵ 향후 계획

○ 2022. 2월 : <mark>시설</mark> 시설장소 임차 및 설계 진행

○ 2022. 3월 : 문영 운영예산 확보(제1회 추경)/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

○ 2022. 4월 : <mark>시설</mark> 공사입찰 및 착공

운영 조례 제정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심의·의결

○ 2022. 6월 : N설 공사 준공/ 운영 수탁기관 선정(적격자심의위원회)

○ 2022. 7월 : 문영 위탁계약 체결

○ 2023. 1월 : **윤영** 인수·인계 및 관리·운영

참고 : 타시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사례



타시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사례

구 분	인력	세부인원	운영주체	2022예 산 (백만원)	면적 (m²)	설립근거	운영방 식	설치년 도
서울	23명	센터장1, 팀장 4, 팀원 18 * 휴노동자쉼터 5개 소 14명 별도	(사)한국비정규 노동센터	3,582	264	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	민간위탁	2015
부산	15명	센터장1, 팀장 4, 팀원 10	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	1,802	283.2 5	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	민간위탁	2020
인천	11명	센터장1, 팀장 3, 팀원 7	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	951	180	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	민간위탁	2022
대건	7명	센터장1, 팀장·팀원 6	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	730	230.7	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조례	민간위탁	2015
울산 (노동 인권센 터)	5명	센터장1, 팀장·팀원 4	(재)울산일자리 재단	422	148.0	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	공공위탁	2020

※ 전국 노동권익센터 운영 현황

- 특·광역시(6) : 광주 제외 전 지역 설치·운영중

- 도(3): 경기・충남・전남 설치・운영중(전북의 경우 설치 준비중)